

소송사무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정 2007.12.24
개정 2011.08.16
개정 2014.01.21
개정 2017.04.11
개정 2019.06.25
개정 2020.03.18
개정 2022.06.30
개정 2023.03.15
개정 2023.03.15
개정 2024.03.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남시청소년재단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관련 소송 전반에 대한 피소 또는 제소의 경우에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송사건중의 승소사건 및 상대방의 소 취하로 인하여 승소로 간주된 사건에 대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의 원활한 회수와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제2조(소장접수 및 피소보고)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해당부서(이하 “소송담당부서”라 한다)는 즉시 문서접수부에 등재한 후에 그 소장을 법무담당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장을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내용을 검토한 후에 소장부본을 소송담당부서로 송부하여 적극 응소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의 지정)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소송수행자”라 한다.)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매 건마다 소송해당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 1명을 지정하되, 사안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② 민.형사 관련 소송을 직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소송대리인 허가를 받는다.

제3조의2(변호사의 선임) ①성남시청소년재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변호사의 선임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4.1.21.>
② 변호사는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유관단체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단, 소송수행 없이 순수 자문활동만 하는 법률고문이나 특정사건에 대한 일회성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위촉 및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1. 법률자문실적 저조를 포함하여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

2. 비위행위자인 경우
3.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로 판단되는 경우
4. 법률고문변호사 및 소송수행변호사간에 이해충돌방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1.8.16.]

제4조(소제기) ① 소송관련부서는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관련부서에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각종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수행자의 의무) ① 소송수행자가 사전 내부방침에 의하여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6>

1. 반소, 소의 취하, 화해.조정, 청구의 포기.인락 의한 소송탈퇴
2. 항소.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의 단서 및 제39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3. 신청사건의 결정시에 인용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또는 기각된 사건에 대한 결정문
4.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
5.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
6.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7. 당사자 쌍방2회 불출석시 기일지정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문변호사의 협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방침은 소송개요 또는 배경, 청구취지, 청구사유 및 상대방의 청구사유, 소송부서 또는 소송수행자의 상대방 청구사유에 관한 반박 및 의견, 문제점 및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중요한 사항, 의문이 있는 사항 등 모든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에 보고하고, 지도를 받아야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재단에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또는 변호사에게 송달된 날부터 14일을 말한다.)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기일 3일전까지 소송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장 고문변호사 운영

제6조(변호사의 선임) 삭제 <2011.8.16>

제7조(위촉 및 해촉) ① 대표이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6.11., 2019.6.25.>

③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재단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다음의 사유로 재단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 가. 불변기일 도과
-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 다. 고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 라. 법률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8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1.>

1. 재단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 및 대표이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2”의 기본에 의하여 각 심급 단위 별로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3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제10조(사건실적부 비치) 대표이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1.>

제3장 소송수행

제11조(본안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는 소송총괄부서의 지도에 따라 본안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입증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동일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하여야 할 또 다른 분쟁의 존부,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존부, 채권보전 및 잠정조치의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반소제기, 소송고지, 가압류 신청, 가처분신청 등을 적극 검토한다.

③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송수행자는 본안 소송전에 항변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의 주장사실 중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쟁점에 대하여는 반박자료 및 법령의 적용에 대한 설명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동수행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기일을 고려하여 적시에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공동명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⑥ 답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법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며, 제출부수는 상대방수에 법원제출용을 더한 수로 한다.

제11조의2(상고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 기간내에 상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고에 있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종료 후 필요에 따라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다.

③ 상고심에 대한 소송수행자지정에 대하여는 원심의 소송수행절차를 준용한다.

④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 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존신설 2011.8.16]

제12조(소송종결시의 조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이행판결 등에 있어 승소판결시의 판결주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검토 할 것
 2. 판결확정으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승소판결이 최종확정된날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하고, 이후 결정받은 금액을 근거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것
- ②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에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것
 2. 패소원인을 규명하여 원처분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등을 검토 할 것
 3. 금전급부판결로서 패소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집행금에 대한 지급을 검토할 것
 4. 변제시에 소송관련부서는 소송총괄부서의 사전심사를 받아 회계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청구서·판결문정본·판결확정증명원·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 인감증명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것

제4장 소송비용의 회수

제13조(소송비용의 회수대상)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신청사건 및 민.형사소송
2.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사건중 소송비용의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

제14조(업무구분) ① 소송비용회수업무는 총괄심사부서와 비용회수부서로 구분하되, 총괄심사부서는 경영본부가 되고 비용회수부서는 당해 소송을 담당한 부서가 된다. <개정 2020.3.18., 2023.3.15.>

② 총괄심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용회수부서에 대한 소송비용회수업무의 지도
2. 소송비용회수예정액의 산정에 대한 적정여부의 심사

③ 비용회수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소사건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법원의 승소간주 확정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총괄심사부서의 사전심사 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건 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것
 2.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결정 할 것
 3. 채무자가 고지기간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를 회수 할 것
 4.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재산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항상 파악하여 정리할 것
 5.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을 때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이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할 것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미회수 가능하다. <신설 2022.6.30.>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단, 이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외부인 포함) 및 사전 의결이 필요하며, 소송비용 회수 착수 처리기한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소송비용계산서의 작성요령) ① 소가기준에 있어 금전청구의 사건은 청구금액을,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 등은 소가증명에 의한 금액을 소송물가액으로 하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② 소송비용은 실제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③ 소명자료에는 영수증·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결과통보) 비용회수부서는 채무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총괄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비치) 소송총괄부서 및 소송비용총괄심사부서에 비치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5호서식”)
2. 신청사건등처리부(“별지 제6호서식”)
3. 소송비용 지출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신청사건비용등 지출대장(“별지 제8호서식”)
5. 소송비용회수 및 미회수대장(“별지 제9호서식”)

제5장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제18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직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4.11.>

1. 재단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재단 또는 대표이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직원

제19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20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성남시청소년재단 또는 대표이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1., 2017.4.11.>

-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18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21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민.형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 이내

2. 신청사건(민.형사소송) 1인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액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7.4.11.>

제22조(정보공개) 대표이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변호사에게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위촉 현황
- 2 재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위임현황
- 3 그 밖에 대표이사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6.25.]

부칙(2007.12.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8.16)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21)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4.11)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6.25.)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3.18.)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6.30.)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3.15.)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3.13.)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별표1] <개정 2011.8.16>

사 건 별 변 호 사 의 선 임 기 준

구 분	심 급 별	소 송 수 행 자	근 거
민.형사 소송	1심중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경우 (가소.가단)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	민사소송법 제 82조
	1심중 합의부사건 및 2심.3심	.변호사를 선임한다.	

[별표2] <개정 2017.4.11., 2017.4.11.>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소송별 구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청구시 구 비 서 류
	내 용	착 수 금	승소사례금	
민 · 형 사 소 송	1. 신청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범위내	좌 동	· 청구서
	2. 본안사건 ·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 물가액 기준)	· 650,000원 이내 · 변호사보수의 소송 비용산입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 완전승소는 착수금의 100분의 150 · 60퍼센트 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용을 곱한금액 · 화해의 성립인락, 소취하(상불취하포함)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50 (단, 조건부 취하는 제외)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사건확정증명원 ·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
	3. 환송심	· 본안사건착수금의 100분의 50범위내	상 동	상 동
기 타 소 송 비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대 : 실액 · 송달액 : 실액 · 검증비 : 실액 · 감정료 : 실액 · 출장비 및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재단 여비규정중 "1~2급 해당액" · 기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액(단, 검증비, 감정비, 소송대리인 수행시 30,000원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 인지보증증명서 · 검증비, 감정료등 납부명령사본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1.21., 2017.4.11., 2024.3.13.>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06나 ○ ○ ○ ○ 건물 등 철거

당사자신청인 : ○ ○ ○

피신청인 : 성남시청소년재단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

○ 소송대리할 사람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비고
○○○○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 : 위 사건과 관계된 업무 수행자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각1부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 ○ ○

○○○○ 지원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사 건 실 적 부

구분 종류	사건명	의 퇴 년월일	의 퇴 내 용	회 신 년월일	회 신 내 용	비 고
소송사건						
이의신청						
법령해석						
기 타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4.1.21., 2017.4.11.>

소 송 비 용 액 확 정 결 정 신 청

신 청 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하대원동)
대표이사 ○ ○ ○

피신청인 ○ ○ ○(123456-1234567)
성남시 ○○구 ○○○로 ○○(○○○)

위 당사자간 귀원 2006가소○○○○, 항소심 2006나○○○○ 임금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항소심 판결선고가 있었고, 신청인이 승소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부담
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별지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소송비용계산서 | 1통 |
| 2. 비용지출관련서류 | 1통 |
| 3. 판결문 사본 | 1통 |
| 4. 위임장 | 1통 |

○○○○년 ○월 ○일

신청인 성남시청소년재단
대 표 자 대표이사 ○ ○ ○
위담당자 ○ ○ ○

(성남시청소년재단 ○○국 ○○담당자 ○○○-○○○○)

○ ○ 법원 귀중

